

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윤희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1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11월 10일

발 의 자 : 이윤희, 김태수, 최영수,
오봉수, 김희걸, 유 용,
김용석(도봉), 유광상, 이순자,
김기대, 이현찬, 김기만,
허기희, 문상모, 조규영,
김동승, 김진철, 장홍순,
장인홍, 김구현, 김문수,
김동윤, 오경환, 남재경,
강구덕, 전철수, 김상훈,
문형주, 김인호, 이신혜,
김영한, 이병해, 이승로,
맹진영, 이숙자, 이혜경,
우미경 의원(37명)

1. 제안이유

-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근거로 하여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촉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교육프로그램, 판매촉진 등 각종 지원사업들을 규정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과 우선구매 등 법령에 따른 여성기업 우대사항을 명시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법·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장은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청할 수 있음(안 제4조·제5조)
- 나.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(안 제6조)
- 다.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,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 등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라. 공공구매시 여성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함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여성기업”이란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.
2. “여성경제인”이란 「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3. “공공기관”이란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및 소속 행정기관, 시가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하고 지정·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) 이 조례는 시 관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·인력·정보·기술·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·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,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5조(차별적 관행의 시정) 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종합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계획(이하 “종합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여성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·인력·정보·기술·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
3.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7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,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여성기업지원위원회) ①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고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자문할 수 있다.

1. 제6조의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·평가
2. 제9조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사항
3.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여성창업과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한다.

1. 여성창업과 여성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
2.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등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
3. 서울시 여성기업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
4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
5. 그 밖에 여성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
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

- 3.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- 4.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-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9조(여성기업에 대한 지원) 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- 1. 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
- 2.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, 신기술·정보의 제공, 경영지도에 관한 지원
- 3.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
- 4.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
- 5. 그 밖에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

② 시장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5조 제1항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제조·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에 대하여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.

제10조(여성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)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(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)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의 구매를 촉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1조(여성기업 홍보·지도)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자치 구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(실태조사), 제8조(여성기업에 대한 지원) 제1항에 따라 비용 발생
 - 같은 조례안 제8조에 제1항에 의한 사업은 서울특별시에서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제외
 - ※ 유사 기추진 중인 사업 내역

조례안 제8조 제1항		유사 기추진사업	세부 내용
제1호	여성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	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운영,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	창업공간 제공, 홍보 및 행정지원, 컨설팅·자문·멘토링·교육 지원
제2호	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	일자리네트워킹	인기업 대상 신속채용 및 후속 인사업무 지원
	신기술·정보의 제공	서울형 R&D지원	제품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
	경영지도에 관한 지원	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	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
제3호	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 촉진을 위한 지원	유통센터 소기업 판로지원	중소기업 판로지원
제4호	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지원	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	중소기업 경영의욕 고취 및 협업 촉진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

나. 추계결과 ≍ 550백만원
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550백만 원으로 연평균 110백만 원임
- 추계의 전제
 - 여성기업 실태조사는 1년 마다 위탁 가정
 - 비용은 2017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 - 물가상승률 미반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≍ 550백만 원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연도	1차년도 (2017)	2차년도 (2018)	3차년도 (2019)	4차년도 (2020)	5차년도 (2021)	합계
		-	-	-	-	-	-	
세입	-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	-
세출	여성기업 실태조사 (제7조)	110	110	110	110	110	110	550
	소계(b)	110	110	110	110	110	110	550
□ 총 비용(b-a)			110	110	110	110	110	550

○ 여성기업 실태조사비 ≙ 550백만 원

- 여성기업 실태조사비 = $\sum_{i=1}^5$ (연간비용) i

i = 비용추계 연차(2017년~2021년)

- 연간비용 ≙ 110백만 원

-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유사사업 1회 평균액 적용
- 유사사업 : 2개 사업 평균

○ 110백만 원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산출근거	금액
도시형 제조업(소공인) 지원	소공인 집적지역 실태조사	120
유통활성화지구 지정·운영	각 상권별 실태조사 및 컨설팅	100
평균		110

주 : 1. 물가상승률 미반영

2.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유사사업 예산 적용하여 추계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

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

남승우

정책조사팀장

여차민

분석관

이정수 ☎02-3705-1280, e-mail(intezer@seoul.go.kr)